

03 ORIGIN ANALYSIS

1.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어떻게 FTA 원산지 확인 서류가 되었을까
2. 중국 철강 수출 허가관리제도의 재시행 이후
한국의 대중 수입동향 점검

TRADE & ORIGIN REPORT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어떻게 FTA 원산지 확인 서류가 되었을까



한현선
한국원산지정보원
정책연구팀 전문연구원

1. 들어가며

관세청은 FTA 활용과 수출 지원을 위해 원산지 간편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한국산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 등에게 FTA 활용을 촉진하고 수출을 진흥하는데 유효한 수단이나, FTA 제도를 자주 활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제도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원산지 확인 서류로 편입 대상이 되는 서식의 국내 발급 기관은 해당 서식이 본래 FTA와 무관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원산지 관련 문의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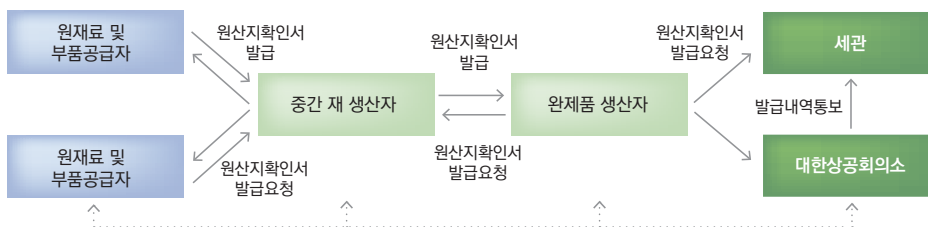
이에, 실제 사례를 통해 국내 기관 발급 서류가 FTA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어떻게 검토받는지 소개함으로써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련 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고자 한다.

2. 원산지 간편확인제도

원산지 간편확인제도는 한국산 입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농축수산물 및 재활용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 가능한 정보를 담은 기존 국내 서류를 발굴하여 국내산 원산지 확인 서류*로 편입하는 제도이다.

*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등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수출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등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

[원산지 확인서 유통경로]



자료 : 관세청 FTA 포털

현재 22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서류가 1,257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에 지정·고시되어 운영 중이다.



〈간편인정대상 서류 유형 및 발급처〉

구 분	인정서류	발급기관	품목(개)
농산물	(1)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2)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서 (3)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4) 지리적표시 등록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030
	(15)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 공급확인서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	
수산물	(5) 물김 수매확인서 (6) 마른 김 수매확인서	수협	101
	(7) 수산물 품질인증서 (8)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증 (9)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10) 수산물 유기수산물 인증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20)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fish) 사용승인서	사단법인 한국수산회	
	(11) 축산물(소) 등급 판정확인서 (12) 축산물(돼지) 등급 판정확인서 (13) 축산물(계란, 닭, 오리) 등급 판정확인서 (21) 축산물(꿀) 등급 판정확인서 (22)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품질평가원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식품류	(14)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한국식품연구원	39
	(17) 우수천일염인증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천일염인증기관	
	(18)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증	시·도지사	
지역특산물	(16) 제주특별자치도 우수제품 품질인증서	제주특별자치도청	48
재활용 공산품	(19)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31

자료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3. 친환경농산물인증서 및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검토

현재 고시에서 지정·운영 중인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중심으로 국내 발급 서류가 농산물의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어떻게 충족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친환경농산물인증서

(1) 제도 개요

친환경농산물인증서는 정부가 지정한 전문 인증기관이 화학자재 사용을 배제하거나

최소화된 환경에서 생산된 농산물임을 인증하는 제도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하위법령에 근거한다.

신청자가 인증신청서·생산계획서 등을 갖추어 신청하면 인증기관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서를 교부하며, 현재 163개 농산물의 원산지 확인 서류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인증서 개요]

구분	내용
정의	정부가 지정한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검사하여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농산물임을 인증해주는 제도
관련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시행규칙,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등
발급대상	농산물, 농축수산물 가공품 등
신청방법	구비 서류를 갖추어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을 하면 인증기관에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관리를 실시
제출서류	인증신청서, 인증품 생산 계획서, 경영관련 자료 등

자료 :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제공 내용 가공

2) 원산지 정보

해당 서류는 유기·무농약 재배 방법에 따라 생산한 농산물의 전체 생산 과정이 친환경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인증서를 교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FTA와는 기본적으로 무관한 목표이나, 친환경 재배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농산물의 생산지 정보를 함께 입증하게 된다.

- (인증서) 유기식품 및 무농약 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 실시 요령 [별지 2호 서식]으로 지정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서식 안에 농산물의 생산자,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2호서식]

Certification No.:			
Certificate of Conformity			
(for producers)			
Certification Type	Validity		
Producer	Business Registration No. (Date of Birth)		
Address			
Location of Operation			
Certified Item	Certified Area		
Side Conditions for Certification			
I hereby confirm that the above mentioned product complies with the certification criteria for organic food, etc. (non-pesticide agricultural products and non-pesticide processed food) pursuant to Article 20 (Article 34) of the Act on Promotion of Environmentally-friendly Agriculture and Fisheries and Management of and Support for Organic Food, etc. and Article 13 (3) (Article 55 (1))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Date(y/ m/ d)
The head of Certification Body			Official Seal

자료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주소, 품목, 생산(사업장) 소재지 정보를 담고 있음

- (인증정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제공하는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친환경농산물인증 정보에 대해 확인 가능하며, 해당 인증정보 내에도 생산자명, 농장 소재지, 품목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음

[친환경 농산물 인증 정보]

생산자명	강부남	
인증번호	01300003 (구 87-3-593)	
인증종류	무농약농산물	
대표품목	벼	
최초인증일자	2018-09-11	
인증기간	2025-09-11 ~ 2026-09-10	
인증면적	10,358.00 m ²	
생산계획량	7,500.00 kg	
농장소재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증품목정보

농가명	품목명	재배면적(m ²)	생산계획량(kg)
강부남	벼	10,358.00	7,500

자료 :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생산자, 생산지, 품목 등 원산지 관련 정보를 담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해당 원산지 정보가 FTA 협정별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 가능한지에 있다.

3) 협정별 농산물 원산지결정기준

기체결 FTA 협정문에서 확인 가능한 농산물 완전생산물품 정의는 협정별로 문구상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재배(grown)**와 **수확(harvested)**이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규정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관련 연구¹⁾에 따르면, 재배 이전 단계인 종자 생산 과정은 체약당사국 영역 밖에서 수행되더라도 무방한 것으로 해설되고 있어, 핵심 판단 요소는 재배·수확 행위의 발생 장소임을 알 수 있다.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FTA 원산지규정 활용방안」, 2023.10.

【협정별 농산물 완전생산물품 정의 요약】

구분	협정	정의
①	칠레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서 정의된 바대로,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
②	싱가포르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재배되고 수확, 채취되거나 또는 채집된 식물 및 식물생산품 부록 3 <부속서 3에 대한 해석 주석> 3. 농산물 및 원예상품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된 농산물 및 원예상품은 비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입된 씨, 봉우리, 대목, 잘라진 가지, 접지 또는 다른 식물의 살아있는 부분 으로부터 재배되었다하더라도 그 당사국의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③	EFTA	당사국에서 재배되고 수확되거나 채집된 채소
④	아세안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배된 후 수확, 채집 또는 수집된 식물 또는 식물 상품
⑤	인도, 에콰도르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된 후 수확·채집 또는 수집된 식물 또는 식물 상품
⑥	페루	대한민국 또는 페루의 영역에서 재배 및 수확, 채집 또는 수집된 식물 및 식물성 제품
⑦	콜롬비아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 및 수확된 식물성 상품
⑧	호주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 및 수확, 수집 또는 채집된 식물성 상품 ²⁾
⑨	캐나다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성 상품
⑩	중국, UAE	당사국에서 재배 및 수확, 수집 또는 채집된 식물과 식물 생산품
⑪	베트남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과 식물성 제품
⑫	뉴질랜드, RCEP	당사국 영역에서 재배 및 수확, 수집 또는 채집된 과일, 꽃, 채소, 나무, 해초, 균류, 그리고 살아있는 식물을 포함한 식물 및 식물성 상품
⑬	중미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 및 수확, 수집 또는 채집된 식물과 식물 생산품
⑭	영국, EU, 튀르키예	당사국 내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성 제품
⑮	인도네시아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과 식물 생산품
⑯	캄보디아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된 후 수확, 수집 또는 채집된 식물과 식물 생산품
⑰	이스라엘	당사국에서 재배, 수확, 수집 또는 채집된 식물과 식물성 상품
⑱	필리핀	그 당사국에서 재배 및 수확, 수집 또는 채집된 식물과 식물 생산품
⑲	미국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 또는 채집된 식물 및 식물생산품

자료 : 각 협정문 내용 가공

참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식물 및 식물성 생산품은 기체결 FTA에서 재배(grown), 수확(harvested), 수집(picked) 및 채집(gathered) 등을 기본요건으로 하고 있고, 모든 FTA에서 재배와 수확을 공통요건으로 규정하며 재배 이전인 종자 생산 과정은 FTA 체결당 사국 영역 밖에서 수행되어도 무방하다'고 해설

2) "식물성 상품"은 식물, 균류, 조류 및 이들의 상품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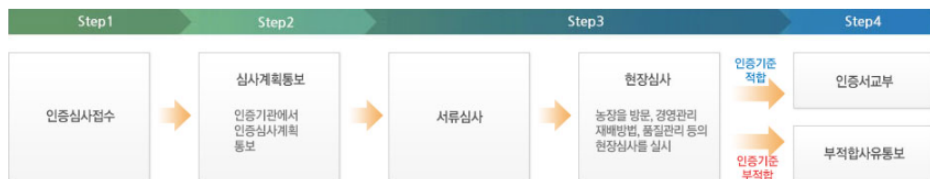
4)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과정 해설

친환경농산물 인증서를 한국산 입증 서류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서식이 국내에서의 재배·수확·수집·채집 사실을 담보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요구된다. 이에 다음 두 가지 관점에서 검토를 진행하였다.

- 1) 서식 정보로 재배·수확 장소 확인 가능 여부: 서식 제공 정보와 공개된 인증 정보를 통해 생산지 확인은 가능하나, 표시 기준 자체는 인증서상 주소지가 실제 재배 필지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인증 획득 과정 중 국내 재배·수확 사실 확인 가능 여부: 인증 신청자는 재배지·파종일·수확일·생산량 등을 기록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신청 내역과 생산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과정]

신청 후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받기까지의 과정 살펴보기!



- 인증 후에도 지속적으로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인증서 발급 후 1년동안 인증이 유효합니다.
- 인증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인증신청서,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인증품 계조·가공 및 취급계획서, 경영관련자료,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또는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 이수 증명자료가 있습니다.

자료 :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이를 종합하면, 친환경농산물 인증서를 획득한 농산물은 국내에서의 재배·수확 사실이 인증 절차 내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FTA 관점에서 한국산 입증 서류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간편인증대상 서류 및 품목 추출방식]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검토	대상품목 고시
해당 인증서로 한국산 입증이 가능한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 (포괄)확인서 고시
① 서식 내용으로 재배 및 수확 장소 확인 가능 여부 - 생산지 확인 가능하나 '생산지' 표시 기준에 대해 별도 확인 필요	- 적용 가능품목 서류 및 품목 지정 고시 - HS 6단위별로 고시 - 대상 서식 및 품목 지속 확대 - 원산지정보원 위탁사업 진행 중
↓	
② 인증 과정에서 국내 재배 및 수확 확인 가능 여부 - (서류심사) 신청인은 재배지, 파종일, 수확일 등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있음 - (현장심사) 인증기관은 작물 생육 시기에 현장심사를 실시하며 제출 서류와 일치하는지를 심사 수행 < 제외 대상 > - 서류 발급(심사) 기준이 FTA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미충족하는 경우 - 서류 발급자의 신뢰도가 낮은 경우	
↓	
③ 적용 가능 농산물 선정	

자료 : 자체 제작



4. 활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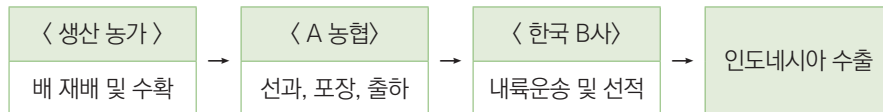
지금까지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가 원산지 확인서류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FTA 적용 수출 상황에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활용 방안을 예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래 예시 사례는 ‘배’를 재배하는 생산 농가가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보유하고 있고, 유통 단계를 거쳐 수출자인 B사에 공급하여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상황을 가정한다. B사는 생산 농가로부터 인증서 사본을 원산지 확인 서류로 수취함으로써, 별도의 원산지소명서 작성 없이 세관(또는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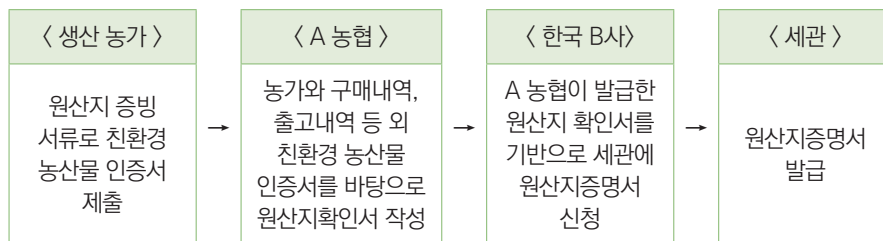
[활용 사례 (예시)]

- ◆ 개요
- 수출자 : 한국 B사
 - 수입자 : 인도네시아 구매자
 - 수출 품목 : 신선 배(품목번호 : 제0808.30호)
 - 적용 협정 : 한-아세안 FTA(원산지결정기준 : 완전생산)

◆ 거래 구조



◆ 원산지 증명서 발급 과정



※ 위 상황은 예시일 뿐이며 원산지 증명서 발급 과정 및 구비 서류는 달라질 수 있음

[원산지소명서 일부]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3. 21.>

원 산 지 소 명 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를 기재합니다. (4쪽 중 제1쪽)

수출자 + 생산자					
1. 수출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전화/팩스번호	
	주 소 (전자우편주소)				
2. 생산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전화/팩스번호	
	주 소 (전자우편주소)				
물 품 명 세					
3. 품명/규격				4. 품목번호(HS No.)	
5. 물품가격	가격조건	공 장 도가격(EXW) []		6. 원산지결정기준	
		본선인도가격(FOB) []			
	금 액			7. 자유무역협정명칭	
8. 주요생산 공 정					
원재료명세서					
9. 연번	10. 재료명	11. 품목번호 (HS No.)	12. 원산지	13. 가 격 수 량 가 격	14. 공급자 (생산자)
15. 합 계	원산지재료				
	비원산지재료				
	합 계				
원산지인정요건 검토					
16. 완전생산기준 충족여부			예 [] 아니오 []		
17.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			예 [] 아니오 []		
18.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			예 [] 아니오 [] (부가가치비율 : %)		
19. 원산지재료로만 생산기준 충족여부			예 [] 아니오 []		
20. 결합기준 충족여부			예 [] 아니오 []		
21. 특정공정기준 충족여부			예 [] 아니오 []		
22. 누적기준 적용여부			예 [] 아니오 []		
23. 최소기준 적용여부			예 [] 아니오 []		
24. 역외가공기준 적용여부			예 [] 아니오 []		
25. 기 타			예 [] 아니오 []		

210mm×297mm[백상지(80g/㎡)]

자료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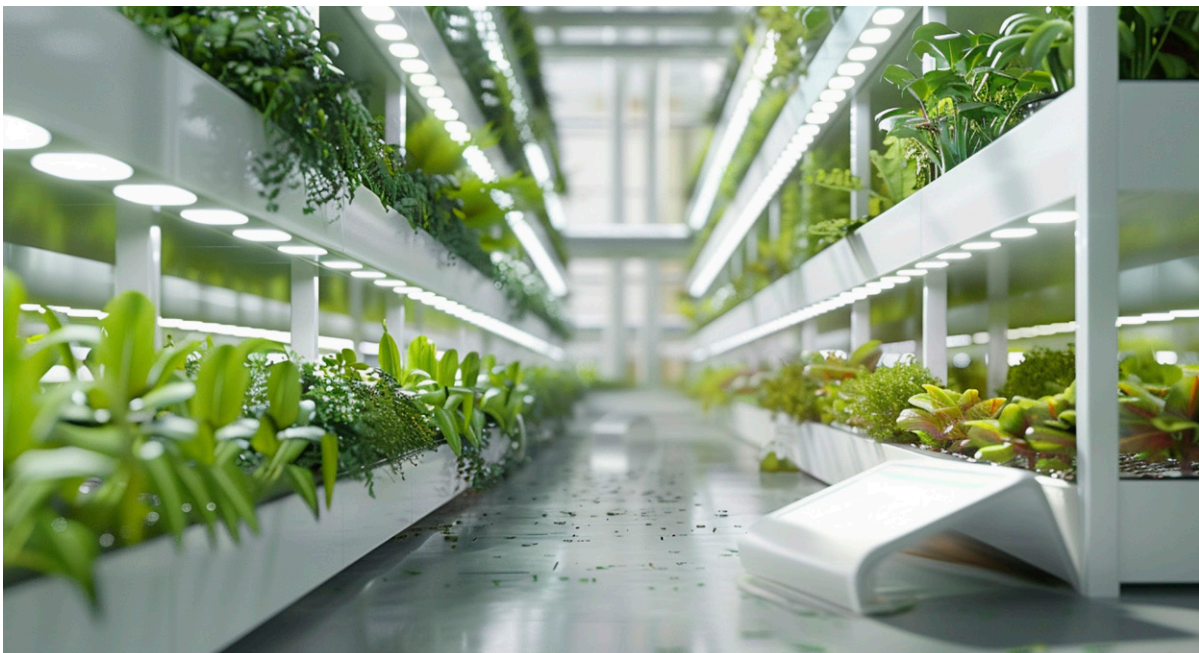
만약 생산 농가에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등 원산지 간편인정 서류를 미구비한 경우 원산지 증명서 발급 과정은 훨씬 복잡하고 어려워진다. 생산 농가에서는 수출 물품의 완전생산(재배, 수확)을 입증하기 위해 원산지 소명서 등 원산지 증빙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품목번호(HS no.), 원산지결정기준 등 관세, FTA 전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전문 업무를 대행할 관세사 등 전문가를 수임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5. 마무리 하며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는 본래 FTA 활용과 전혀 관계 없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산물의 건강한 재배방식’을 검증하기 위해 운영하는 국내 제도이다. 그러나 인증 심사 과정에서 해당 농산물이 국내에서 재배 및 수확이 이루어졌음이 입증될 수 있다.

다만 해당 인증서 획득 과정에서 농산물의 원산지가 확인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인증서류가 원산지 확인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당해 서류에 대하여 FTA 활용 시 원산지 확인서류로 인정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원산지 간편인정제도’이다. 이러한 원산지 간편인정제도의 적용 확대로 국내 제도와 FTA를 연결하고 결과적으로 국내 농산물의 FTA 활용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원산지 간편인정제도의 발전을 위해 의견을 상시 접수 받고 있으니 유관 기관 및 협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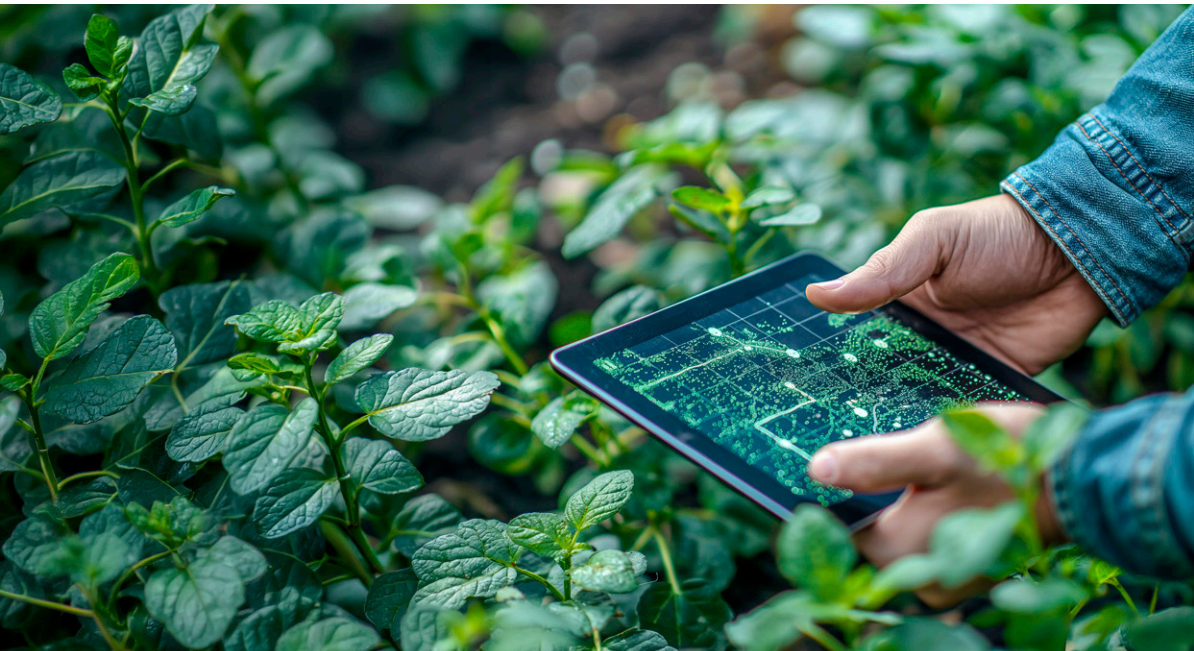


- 요청 사항 : 원산지증명 간소화 제도 추가 발굴을 위한 확대 필요 품목 및 기타 의견
 □ 회신 양식 : 권고 양식 제공*
 * 붙임 파일 참조, 자유 서식 가능
 □ 수 신 처 : 연구기획실 정책연구팀 (kioi_rdd5@origin.or.kr/031-600-0762)

붙임

원산지 증명 간소화 제도 품목 추가 발굴을 위한 의견서(예시)

일 자	26.09.10	소 속	한국원산지정보원	연락처	(E-mail) (☎)
성 명	홍길동	직 책	전문연구원		
추천품목	- (추천 품목) 실파 - (HS CODE) 0703.90* * 기재 선택 사항				
추천서류	(추천 서류)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추천사유	해당 인증서 내용으로 실파의 생산지(파종, 재배, 수확)가 국내에서 이루어졌음을 확인 가능함				
기타의견					



중국 철강 수출 허가관리제도의 재시행 이후 한국의 대중 수입동향 점검



김민준
한국원산지정보원
신통상규제팀 전문연구원

1. 수출 허가관리제도 배경 및 주요 내용

1) 수출 허가관리제도 재시행 배경

중국은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최근 부동산과 건설 경기 둔화로 내수 수요가 감소하는 가운데 생산량은 감소한 수요 폭만큼 조정되지 않아 철강 공급과잉이 이어지고 있다. 내수에서 소화되지 못한 물량이 수출로 전환되면서 중국의 철강 수출은 글로벌 공급과잉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25년 9월 발표한 「철강산업 안정적 성장 방안(2025~2026년)¹⁾」에서

1) 《钢铁行业稳增长工作方案(2025—2026年)》,工业和信息化部·自然资源部·生态环境部·商务部·市场监管总局, 2025.09.22.

생산능력과 생산량을 조정하고 제품 품질과 산업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철강제품의 수출 질서를 관리한다는 방침을 제시하였다. 이어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12월 9일 공고 제79호²⁾를 통해 2026년 1월 1일부터 일부 철강 및 철강제품에 대한 수출 허가관리제도 재시행을 발표하였다.

관리 대상인 철강제품을 수출하려는 기업은 화물 수출계약서와 생산자가 발급한 제품 품질검사 합격증명서를 제출하고 수출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공고 제79호에는 제도 재시행의 구체적인 목적이나 수출량 감축 목표가 명시되진 않았지만, 2025년 12월 18일 진행된 중국 상무부의 정례브리핑³⁾에 따르면 이번 조치가 수출량이나 기업의 경영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철강제품 수출에 대한 모니터링·통계분석 강화와 수출제품의 품질 추적이 목적임을 알 수 있다.

2) 수출 허가관리제도 운영방식 및 주요 변화

철강 수출 허가관리제도는 2007년 처음 시행된 뒤 2008년 일부 품목과 운영방식이 조정되었으며, 이후 중단되었다가 2026년 다시 시행되었다. 2026년 제도는 과거와 비교해 관리 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서류 요건이 구체화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큰 변화는 관리 대상 품목의 확대이다. HS 6단위를 기준으로 2007년 63개, 2008년 66개에서 2026년 199개로 대상 품목이 확대되었다. 과거 열간·냉간압연제품, 도금강판, 선재, 봉강과 형강 등 압연강재 중심에서 2026년은 철강 원료와 반제품, 스테인리스강, 합금강, 강관과 관 연결구류까지 관리 범위에 포함되었다.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구체화되었다. 2026년부터 수출기업이 화물 수출계약서와 생산자가 발급한 제품 품질검사 합격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2) 《公布对部分钢铁产品实施出口许可证管理》,商务部·海关总署, 2025年 第79号, 2025.12.09.

3) 《商务部召开例行新闻发布会(2025年12月18日)》, 商务部, 2025.12.18.

연도별 제도 운영방식 및 주요 변화

구분	2007년 ⁴⁾	2008년 ⁵⁾	2026년 ⁶⁾
공고 명칭	일부 철강재 수출에 대한 수출허가증 관리 시행	2008년 수출 허가관리 화물목록	일부 철강제품에 대한 수출허가증 관리 시행
공고일/시행일	2007.04.30./2007.05.20.	2007.12.29./2008.1.1.	2025.12.09./2026.01.01.
대상 품목 (HS 6 기준)	63개	66개	199개
품목 특징	열간·냉간압연제품, 도금강판, 선재, 봉강 및 형강 등 압연강재 중심		철강 원료, 스테인리스강, 합금강, 강관 및 관 연결구류 등
서류 요건	별도 서류 요건이 명시되지 않음		• 화물 수출계약서 • 품질검사 합격증명서(생산자 발급)
운영 범위	• 일반무역으로 수출되는 철강제품 한정 • 기타(가공·보상 등) 무역은 허가증 면제		• 일반 및 기타(가공·보상 등) 무역 - 모두 허가증 필요

자료 : 중국 상무부·해관총서(商务部·海关总署) 공고 및 지방 상무당국(선양) 자료, 저자 재구성

운영 범위도 확대되었다. 2007년과 2008년에는 철강 수출 허가관리가 일반무역에 한정되었으며, 2008년에는 가공무역·보상무역 등 기타 형태의 철강 수출은 수출허가증이 제외·면제되었다. 반면 2026년에는 일반무역 한정이란 문구가 삭제되어 가공무역과 보상무역으로 수출하는 관리 대상 철강제품도 허가관리 범위에 포함되었다. 가공무역과 보상무역에는 하나의 허가증을 유효기간 내 여러 차례 사용할 수 있는 비일비일증이 적용되며, 그 밖의 무역형태에는 일비일증이 적용⁷⁾된다.

3) 수출 허가관리 대상 품목

2026년 수출 허가관리 대상은 HS 6단위 기준 199개 품목으로, 제72류 철강 152개와 제73류 철강제품 47개로 구성된다.

- 4) 《对部分钢材出口实行出口许可证管理》,商务部·海关总署, 2007年 第41号, 2007.04.30.
- 5) 《2008年出口许可证管理货物目录》,商务部·海关总署, 2007年 第101号, 2007.12.29.
- 6) 《公布对部分钢铁产品实施出口许可证管理》,商务部·海关总署, 2025年 第79号, 2025.12.09.
- 7) 일비일증(一批一证)과 비일비일증(非一批一证)

철강제품 100톤 수출 시의 허가증 사용

구분	일비일증(一批一证)	비일비일증(非一批一证)
허가증 사용	허가증 1건당 세관 신고 1회	허가증 1건으로 여러 차례 세관 신고 가능
예시	25톤씩 4회 수출 시 4건의 허가증 사용	25톤씩 4회 수출 시 1건의 허가증 사용
사용 한도	1회	유효기간 내 최대 12회

자료 : 중국 상무부·해관총서(商务部·海关总署) 공고, 저자 재구성

2026년 중국 철강·철강제품 수출 허가관리 대상 품목

구분	연번	품목군	HS 범위	품목 수(HS 6)
제72류 (철강)	1	비합금강 판재류	7208~7212	46개
	2	기타 합금강	7224~7229	29개
	3	비합금강 봉·형강·선재류	7213~7217	28개
	4	스테인리스강	7218~7223	28개
	5	원료·기초소재	7201, 7203~7205	15개
	6	반제품	7206~7207	6개
	소계	HS 제72류 152개		
제73류 (철강제품)	7	강관류	7303~7306	31개
	8	관 연결구류	7307	10개
	9	구조재·철도재	7301~7302	6개
	소계	HS 제73류 47개		
합계		199개		

제72류에는 원료·기초소재와 반제품부터 판재류, 스테인리스강 및 기타 합금강까지 포함되며, 제73류에는 강관과 관 연결구류, 구조재·철도재가 포함된다. 과거 압연강재 중심이었던 관리 대상이 철강 원료부터 가공제품까지 확대되면서 2026년 수출 허가관리는 철강 생산과 가공의 여러 단계에 걸친 품목을 포괄하게 되었다.

제도 시행 이후 아직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수입 변화를 제도의 영향으로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관리 대상이 크게 확대된 만큼, 시행 초기부터 한국의 중국산 철강 수입이 전반적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또는 특정 품목군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2026년 상반기 수입실적을 기준으로 관리 대상 품목의 초기 수입 흐름을 점검하였다.

2. 2026년 상반기 한국의 중국산 철강 수입동향

1) 수입동향 점검 기준

중국의 철강 수출 허가관리 재시행 이후 나타난 초기 수입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허가관리 대상인 HS 6단위 199개 품목의 2026년 상반기 수입실적⁸⁾을 점검하였다. 2026년 1~6월 누계

8) 2026년 6월 기준 해당 품목의 국가별 수입 순위를 검토(수입 중량 기준)

수입량을 2025년 연간 수입량의 50%와 비교하여 중국산 철강의 수입 동향을 유형화하였다.

2026년 상반기 수입량이 비교 기준보다 10%를 초과한 경우는 '증가', $\pm 10\%$ 범위는 '유지', 10%를 초과하여 적은 경우는 '감소'로 분류하였다. 또한 2025년에는 수입실적이 있었으나 2026년 상반기에는 수입실적이 없는 품목은 '중단', 두 기간 모두 수입실적이 없는 품목은 '제외'로 구분하였다. 다만 2025년 연간 수입량의 50%는 초기 수입 흐름을 비교하기 위해 설정한 기준으로 실제 전년 동기 실적을 의미하지 않는다.

중국산 철강 수입 통계 비교 기준과 수입 유형

구분	내용
비교 기준	2025년 전체 수입 중량의 50%와 2026년 상반기(1-6월) 누계 비교
'증가'	2026년 상반기 수입 중량이 비교 기준보다 10%를 초과하여 많은 경우
'유지'	2026년 상반기 수입 중량이 비교 기준의 $\pm 10\%$ 범위에 있는 경우
'감소'	2026년 상반기 수입 중량이 비교 기준보다 10%를 초과하여 적은 경우
'중단'	2025년에는 수입실적이 있었으나 2026년 상반기에는 없는 경우
'제외'	2025년과 2026년 상반기 모두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

자료 : 한국무역협회 수입 통계, 저자 작성

2) 수입 유형 분포와 중국산 수입 순위

앞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수입 흐름을 살펴보면, 전년 수입실적의 50% 대비 2026년 상반기 수입량이 증가한 품목은 70개, 유지 중인 품목 26개, 감소 중인 품목 90개, 수입이 중단된 품목 7개로 확인되었다.

중국산의 수입 유형과 수입 순위

유형	중국 관리 대상 품목	중국산 수입이 가장 많은 품목
① 증가	70개	51개
② 유지	26개	23개
③ 감소	90개	51개
④ 중단	7개	-
⑤ 제외	6개	-
합계	199개	125개

자료 : 한국무역협회 수입 통계, 저자 작성

국가별 수입실적을 보면, 관리 대상 199개 품목 가운데 중국산 수입량이 가장 많은 품목은 125개로 확인되었다. 이들 가운데 수입이 증가한 품목은 51개, 유지 중인 품목은 23개로 총

74개였으며, 감소한 품목은 51개였다. 전체적으로는 수입 흐름이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았지만, 일부 품목에서는 뚜렷한 증가세와 감소세가 확인되는 등 품목별 수입 흐름에 차이가 확인되었다.

3) 수입 유형별 특징

① ‘증가’ 유형

‘증가’ 유형에서는 반제품과 비합금강 봉·형강·선재류 등의 수입이 두드러졌다. 특히 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HS 7209.15)의 경우 2026년 상반기 수입량이 299톤으로, 2025년 연간 수입량 517톤의 50%를 넘어서는 증가세를 보였다.

‘증가’ 유형 대표 품목 수입 통계

(단위 : 톤, 천\$)

No.	품명	HS 6	2025 수입		2026(6) 수입		수입단가 증감률(%)
			종량	금액	종량	금액	
1	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 (냉간압연·3mm 이상)	7209.15	517	298	299	1,105	+541.2%
2	비합금강 형강 (냉간성형·가공)	7216.91	116	139	165	156	-21.1%
3	세로용접강관	7305.31	126	984	116	439	-51.5%

자료: 한국무역협회, 관세법령정보포털, 저자 재구성

가격 요인이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톤당 수입단가를 살펴본 결과, 비합금강 형강(HS 7216.91)과 세로용접강관(HS 7305.31)은 수입단가 하락과 수입량 증가가 동시에 나타났고, 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HS 7209.15)은 수입단가가 541.2% 상승하였음에도 수입량이 증가하였다.

① -1 주요 증가 품목

‘증가’ 유형에서 상반기 수입량이 전년도 연간 실적을 넘어선 품목과 신규 수입이 발생한 품목이 확인되었다. 특히 철·비합금강 반제품(HS 7207.20)의 경우 2026년 상반기 수입량이 7만 1,414톤으로, 2025년 연간 수입량 6만 7,184톤을 이미 초과한 수입실적이 확인되었다. 또한 티(T) 형강(HS 7216.22)의 경우 2025년에는 중국산 수입실적이 없었으나 수출 허가관리제도가 시행된 2026년 상반기 23톤의 신규 수입실적이 나타났다.

‘금증’ 유형 대표 품목 수입 통계

(단위 : 톤, 천\$)

No.	품명	HS 6	2025 수입		2026(6) 수입		수입단가 (%)
			중량	금액	중량	금액	
1	철·비합금강 반제품 (탄소 0.25% 이상)	7207.20	67,184	31,011	71,414	33,815	+2.6%
2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 (열간압연·4.75mm 이상)	7220.11	211	516	3,234	8,689	+9.9%
3	실리코망간강 봉	7228.20	15	30	39	37	-52.6%
4	티(T) 형강	7216.22	-	-	23	25	신규 수입실적

자료: 한국무역협회, 관세법령정보포털, 저자 재구성

가격 요인이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톤당 수입단가를 살펴본 결과, 실리코망간강 봉(HS 7228.20)은 수입단가가 52.6% 하락하면서 수입량이 급증하였고, 철·비합금강 반제품(HS 7207.20)은 수입단가가 2.6% 상승하였음에도 2025년 연간 수입량을 초과한 수입실적이 확인되었다.

② ‘유지’ 유형

‘유지’ 유형에서는 판재류와 강관류, 합금강 등이 분포하고 있다. 방향성 규소전기강 평판압연제품(HS 7225.11)과 같은 품목의 경우 상반기 수입량이 2만 2,620톤으로, 2025년 연간 수입량 4만 4,332톤의 절반 수준을 유지 중으로 나타났다.

‘유지’ 유형 대표 품목 수입 통계

(단위 : 톤, 천\$)

No.	품명	HS 6	2025 수입		2026(6) 수입		수입단가 증감률(%)
			중량	금액	중량	금액	
1	방향성 규소전기강 평판압연제품	7225.11	44,332	81,462	22,620	35,944	-13.5%
2	철강관(기타)	7306.90	9,981	11,891	4,614	5,024	-8.6%
3	고속도강 봉	7228.10	611	4,853	334	3,588	+35.2%

자료: 한국무역협회, 관세법령정보포털, 저자 재구성

가격 요인이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톤당 수입단가를 살펴본 결과, 방향성 규소전기강 평판압연제품(HS 7225.11)과 철강관(HS 7306.90)은 수입단가가 하락하여도 수입량은 유지 중으로 확인되었고, 고속도강 봉(HS 7228.10)의 경우 수입단가가 35.2% 상승하였음에도 수입량이 유지되고 있었다.

③ ‘감소’ 유형

‘감소’ 유형에서는 비합금강 판재류와 강관류, 스테인리스강 등에서는 수입 감소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특히 합금강 평판압연제품(HS 7225.40)의 경우 2026년 상반기 수입량이 1만 2,037톤으로, 2025년 연간 수입량 2만 8,813톤의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입량 감소가 확인되었다.

‘감소’ 유형 대표 품목 수입 통계

(단위 : 톤, 천\$)

No.	품명	HS 6	2025 수입		2026(6) 수입		수입단가 증감률(%)
			중량	금액	중량	금액	
1	합금강 평판압연제품 (열간압연·코일 제외)	7225.40	28,813	24,118	12,037	13,354	+32.5%
2	스테인리스강 선	7223.00	24,604	42,897	10,657	21,275	+14.5%
3	주철관	7303.00	1,189	2,180	426	509	-34.8%

자료: 한국무역협회, 관세법령정보포털, 저자 재구성

가격 요인이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톤당 수입단가를 살펴본 결과, 주철관(HS 7303.00)은 수입단가 하락과 수입량 감소가 나타났고, 합금강 평판압연제품(HS 7225.40)과 스테인리스강 선(HS 7223.00)은 수입단가 상승과 수입량 감소가 확인되었다.

③-1 주요 감소 품목

‘감소’ 유형에서는 대표적으로 합금강 평판압연제품(HS 7225.99)이 있으며, 2026년 상반기 수입량이 8,457톤으로, 2025년 연간 수입량 3만 3,931톤의 절반에 크게 못 미치는 수입실적이 확인되었다.

‘감소’ 유형 대표 품목 수입 통계

(단위 : 톤, 천\$)

No.	품명	HS 6	2025 수입		2026(6) 수입		수입단가 증감률(%)
			중량	금액	중량	금액	
1	합금강 평판압연제품(기타)	7225.99	33,931	47,029	8,457	15,694	+33.9%
2	오일·가스 배관용 강관(기타)	7305.19	227	806	35	86	-30.8%
3	무계목 드릴파이프	7304.23	250	975	8	294	+842.3%

자료: 한국무역협회, 관세법령정보포털, 저자 재구성

가격 요인이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톤당 수입단가를 살펴본 결과, 오일·가스 배관용 강관(HS 7305.19)은 수입단가 하락과 수입량 급감이 나타났고, 합금강

평판압연제품(HS 7225.99)과 무계목 드릴파이프(HS 7304.23)의 경우 수입단가 상승과 수입량 급감이 확인되었다.

④ ‘중단’ 유형

‘중단’ 유형은 2025년에는 중국산 수입실적이 있었으나 2026년 상반기에는 수입이 발생하지 않은 품목으로, 총 7개가 확인되었다. 특히 HS 제7208.25호, HS 제7208.26호 및 HS 제7211.13호에 속한 평판압연제품은 한국 덤핑방지조치 대상⁹⁾ 품목과 중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단’ 유형 품목 수입 통계

(단위 : 톤)

No.	품명	HS 6	2024 (중량)	2025 (중량)	2026 (중량)	무역 구제조치
1	철이나 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 (두께가 3mm 이상 4.75mm 미만)	7208.26	17,092	9,061	-	대상
2	철이나 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 (기타)	7208.25	1,568	3,075	-	대상
3	비합금선철 (인 함유량이 0.5% 이하)	7201.10	900	1,316	-	비대상
4	철이나 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 (인장강도 340MPa 이상)	7209.28	2	118	-	비대상
5	철이나 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 (4면 압연 또는 크로스드박스패스)	7211.13	2	111	-	대상
6	철이나 비합금강의 봉 (기타 쾌삭강)	7213.20	0	49	-	비대상
7	철이나 비합금강의 봉 (압연공정 튜브 모양)	7213.10	0	24	-	비대상

자료: 한국무역협회, 관세법령정보포털,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저자 재구성

3. 2026년 상반기 한국의 중국산 철강 수입동향 점검 결과

중국의 철강 수출 허가관리 대상과 절차가 확대됨에 따라, 제도 재시행 이후 한국의 중국산 철강 수입에 초기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점검하였다.

9)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령 제35호, 2026.6.23. 시행

점검 결과, 대상 품목 전반에서는 수입 증가·유지·감소가 혼재하여 일률적인 수입 위축은 확인되지 않았다. 수입단가 역시 증가·감소 품목에서 서로 다른 흐름을 보여 가격 변화만으로 수입 증감을 설명하기 어려웠다.

다만 품목군별로는 반제품에서 수입 증가가, 강관류에서는 수입 감소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등 서로 다른 흐름이 나타나, 중국산 철강 수입구조 변화의 초기 신호가 일부 포착되었다.^{10), 11)}

물론 일부 감소·중단 품목은 국내 무역구제조치 등 다른 요인의 영향도 함께 나타나고 있어, 현재의 수입 변화를 중국의 수출 허가관리 재시행에 따른 영향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수출 허가관리 재시행에 따른 전반적인 수입 위축보다는, 품목군별로 수입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과 이러한 변화가 향후 중국산 철강 수입구조의 변화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4. 향후 과제

이번 초기 점검을 통해 수출 허가관리 대상 품목의 전반적인 수입 위축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반제품 수입 증가와 강관류 수입 감소 등 품목군별로 상이한 흐름을 확인함으로써 중국산 철강 수입구조 변화의 초기 신호를 포착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향후에는 이러한 신호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실제 수입구조의 변화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반제품은 국내 무역구제조치와의 연관성을, 강관류는 다른 국가로부터의 대체 수입 여부를 함께 살펴 품목별 수입 변화의 원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분석기간을 확대하여 현재 나타난 흐름의 지속 여부를 확인하고, 중국의 수출 허가관리 대상이나 운영방식이 추가로 조정될 경우 수입 변화와의 연계성도 함께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10) 완제품 막히자 반제품으로... 中 철강, '관세 없는 길'로 들어온다, 조선비즈, 2026.06.14.

11) 「“中 저가공세 안 끝나”...반제품·특수강으로 갈아타기」, 딜사이트, 2026.07.09.